

2019년 제3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19. 10. 14.(월)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 석	◦ 재적위원 : 30명		
	◦ 참석위원 : 24명 ※ 대리참석 6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공동의장)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김병섭(공동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한국감사협회 회장 류근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종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개발원장 허정희(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代)
		한국행정연구원 경영부원장 안혁근(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전성환(代)
	◦ 불참위원 :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우성	
◦ 공정신뢰 분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 실행위원 이재일		
◦ 총괄분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공영제추진팀장 구의청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교육분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안종훈
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 결정	
심의 안건	<p>◦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 원안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함 - 구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것임 → 당해 연도에 구조금 집행이 저조하면 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 설정 시 이를 반영하게 됨 구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신고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향후에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있음 현재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교육이 환경, 안전, 보건, 의료 등 많이 있는데, 공공계약을 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대안으로 공공기관이 입찰할 때 진행하는 설명회에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서 실효성을 강화할 수도 있음 -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외부기관에 신고 접수를 위탁하고 있음. 역설적으로 권익위와 감사부서에 대한 신뢰문제, 그리고 익명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지만, 허위신고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신고 대행을 하더라도 완전한 익명이 아닌 신고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가지고 있게 해야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p>→ 현재 서면,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위탁 운영 여부, 익명창구 운영여부, 신고자 정보관리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분석 중에 있음. 분석 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각 공공기관에 지침을 전달하고자 함</p> <p>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칠 것이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의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신고의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안문에 ‘신고 오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의 문구를 넣어 앞서 이야기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공익신고 실태와 수준에 대한 내부적 판단이 있을 때 오남용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임. 오남용에 대한 실태가 없음에도 오남용 표현을 사용하면 자칫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p>◦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p> <p>→ 보류(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 재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준공검사제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음. 감리사가 준공검사를 하는데 건설사와 감리사 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음 <p>그렇기 때문에 감리사와 별도로 준공검사를 지방자치단체 건설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택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건축주가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건축법에는 50%이상 입주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를 꾸릴 수 없게 되어 있음 <p>입주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약간의 하자에 대해서는 묵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축주 역할을 할 사람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리사가 하자를 밝혀낸다 한들 개인은</p>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주택법 전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근본적인 문제는 후분양 제도라고 생각함. 분양제도를 바꾸지 않고 논의를 하는 것은 근본 행위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후분양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함

→ 정부에서는 향후 공공아파트의 70%정도는 공정률 60%가 도달했을 때 분양하도록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민간 아파트는 여전히 선분양 제도에 있기 때문에, 선분양 제도를 전제로 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물건을 먼저 만들어 파는 후분양 제도가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건축 산업 여건 상 어려울 수 있음. 미리 정해진 것에서 변경되는 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함. 선분양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

- 제안문의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함

1번,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받은 설계도면’ → ‘변경승인을 포함하되, 변경승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2번 ‘중요 내외장재를 정하여 이를 변경할 때에는’ → ‘중요 내외장재를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로 하여 임의의 변경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함

-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설계도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의 책자를 보고 판단을 함.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시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것보다 동등하거나 향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는 책임도 따름. 규제나 제도가 의사결정 행위를 방해할 수 있음

변경승인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 또는 변경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어야 함. 다만, 주무관청에서 최종적으로 입주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과정이 늘어날 뿐이기 때문에 감리사의 역할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함

- 건축주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 그 역할은 감리사가 하는데 감리사를 건설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일부를 고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선분양 제도의 전반을 보완할 것인지 초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것임
- 실제로 큰 공사의 경우 감리사를 별도로 둔다고 하여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일부를 해결한다고 전체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 지자체가 준공검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한 팀이 그 지역의 수십 개의 건설 사업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현장 사정을 더욱 알지 못함
- 민간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사전 점검을 하고 그 의견으로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입주자의 사정이 맞물려 있어 불가능하고 입주 예정일을 연기할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큼
- 하자가 있으면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을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누가 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논의가 발전되지 않을 것임

시공사, 국토부, 지자체 모든 주체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무차원에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안을 다시 만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 지금까지 건의된 내용은 준공검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음. 이번

회의명	◦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p>제안은 그대로 진행하고 건의가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2차적인 과제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층위를 나누어야 함. 선분양, 후분양 제도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님. 준공검사도 반부패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함 <p>다만, 제안을 할 때 앞서 건의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를 좁혀서 공정성·투명성 관련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맞물려 있는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함. 이번 안건은 다듬어서 재상정 하도록 하겠음
	<p>◦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p>

[붙임]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관련 변호사 비용, 필요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구조금 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추적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4. 공익신고를 대리 접수하는 신고대행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점검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지침을 배포하는 등 신고대행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2019년 10월 14일